

한말·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파악*

—光武戶籍과 民籍簿 비교 분석—

孫炳圭**

- | | |
|----------------------|----------------------|
| I. 머리말 | IV. 호주 변동과 민적 파악의 추이 |
| II. 제주 하모리의 광무호적 | V. 민적법 시행기의 호구파악 |
| III. 민적부의 작성시기와 자료현황 | VI. 맺음말 |

• 국문초록

제주 하모리의 光武戶籍은 이전의 구호적에 비해 호수가 증가했으나 호를 잘게 분호하는 데에 그칠 뿐, 구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나 1907년에는 더욱 소규모로 호가 분할되고 많은 수의 호구가 새롭게 파악되었다. 통감부의 인구정책으로 인하여 호수를 증대하도록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이어 1909년부터 시행된 民籍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12년경의 民籍簿는 민적법으로 조사된 민적을 일련의 동호번호로 재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광무호적과 같이 ‘居住地主義’의 주민등록형식을 띠고 있다. 이 민적부는 기존의 호를 지속적으로 分戶하여, 이전에 결락되었던 연소자층을 호의 구성원으로 총당하였다.

면리단위의 행정처가 민적을 조사하게 됨으로써 1915년경에 민적부가 새롭게 작성되었다. 이 민적부는 연장자를 호주로 삼아 이전에 분할되었던 호들을 하나의 호로 合戶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결과 1923년경의 민적부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호구를 파악하는 ‘本籍地主義’로 호구가 파악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민적부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5-A00001).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는 1922년의 ‘朝鮮戶籍令’에 근거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호적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한말에 이르기까지 조선 호적은 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역을 단위로 일정 수준의 호구총수가 확보되면 되었다. 일제 초기의 민적은 부세와 관련 없이 조사되었으나, 여기에도 여전히 인구누락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총독부는 구래의 지방자치적인 호구과약을 폐쇄시키고 혈연관계에 기초하는 인구과약 방식을 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 주제어

光武戶籍(대한제국기의 호적), 民籍簿(일제초의 호적), 居住地主義(현주소에 의거함), 本籍地主義(출신지에 의거함), 인구조사



I. 머리말

제주 하모리에는 1898년 이후 1907년에 이르는 매년의 光武戶籍과 1909년 민적법시행 이후에 작성된 세 시기의 民籍簿가 현존한다.¹⁾ 광무호적은 본래 낱장의 호적표로 작성되나 제주의 경우에는 구호적과 같이 면리단위의 호적중초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1909년 이후에 작성되기 시작하는 민적은 하나의 장부인 민적부로 묶이어 보관되는데, 그 가운데 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호주가 제적될 때마다 그 호의 호적을 빼내어 除籍簿로 철하고 현호주로 새 호적을 작성하여 끼워넣는 식으로 하여 현재의 호적에 이른다.

그런데 제주 하모리의 민적부는 호주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규의 호로 교체하기 위해 해당 호를 빼내어 모아둔 제적부 형태의 장부가 아니다. 조선시대 호적처럼 작성 시기를 정기적으로 정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나, 정책과정에서 몇 차례의 개정된 민적 작성방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재정리하게 됨으로써 한 지역에 여러 부의 민적이 남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호적과 일본의 호적이 가지는 전통적 인구과약 방법의 상이성에서 출발하는 당시대 민적의 특수한 위상에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다.

민적은 일찍이 민적조사의 성과물인 민적통계표를 검토하고 전산화하여 소개한 것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²⁾ 민적조사는 1925년의 國勢調査가 실시되기 전까지 구호적에 비해 인구과약의 양적 측면에서나 근대적인 제도를 적용한 측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접점에서 실시된 정부차원의 사회통합 방법이라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다.

광무호적과 제주지역의 호적중초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호적의 호구편

1) 『濟州大靜縣下臺瑟里戶籍中草(5책)』(2000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하모리 민적부(3책)』(제주도 하모리 사무소 소장).

2) 이현창,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 19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적통계표의 검토』, 『고문서연구』 9·10, 1996.

제 원리와 관련하여 자료적 성격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부세운영과의 관련에서도 언급되고 있다.³⁾ 근래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민적법의 시행과정과 개정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 민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게 되었다.⁴⁾ 그런데 조선시대의 호적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고 민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주 지역에 민적부가 현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적부가 어떠한 형식으로 남아 있는가? 민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호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광무시기의 호적과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는가? 조선시대 호적으로부터 민적으로의 전환은 한말 일제하 인구파악을 통한 사회통합 방법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문을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풀어보고자 하나, 현 상황은 기초적인 자료 분석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II. 제주 하모리의 광무호적

19세기 제주도 호구파악의 경향을 전국적 경향과 비교해 보면, 제주만의 독특한 특성을 읽을 수 있다. 전국의 호구총수는 3년마다 호적이 작성되는 식년에 지방의 호적대장 말미에 기재된 호구통계를 수합하여 파악되었다. 18세기 이후 광무호적이 작성되고 있는 시기까지 호당구수는 4.1~4.2를 전후로

3)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대동문화연구』42, 2003;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단성 배양리와 제주 덕수리의 사례」, 『대동문화연구』49, 2005; 허월영, 「19세기 제주지역의 호구기록과 부세제도—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 분석을 중심으로—」, 2004.12. 경제사학회 동아시아학술원 공동주최 ‘조선후기 인구와 가족의 이해 학술회의 발표문. 이외에 조석근, 「광무년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1990, 민음사; 이세영,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 『역사와 현실』7, 1992, 한국역사연구회 등의 연구가 있다.

4) 李英美, 「韓國近代戶籍關聯法規の制定及ひ改正過程—民籍法を中心—to」, 『東洋文化研究』6, 日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2004.

고정적인 수치를 보인다.⁵⁾ 인구의 실제적인 변동과 관계없이 호당구수를 기준으로 지역의 호구총수가 비총제적인 수치로 고정화된 것이다.

호적장부는 군역 징수와 호단위의 부세수취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18세기 후반 이후로 군역도 지역을 단위로 비총제적인 군총으로 배당되었을 뿐, 군역자의 개별적인 과약은 방기된 상황이었다. 단지 군포미로 전환되지 않은 정병만이 군안으로 파악되며, 호적에는 군역명을 특정하지 않고 차출대상이 되는 호를 파악하는 정도였다.⁶⁾ 더구나 지방재정의 확보책과 상납 조세의 지역 공동납적인 분담, 환곡 및 군역 수취의 토지세화와 함께 호구를 수단으로 하는 징수방법이 일반화되었다. 19세기에는 지방군현 내의 면리단위로 호세를 배분하고 면리단위에서 다시 호구수를 조절하는 작업이 일상화 되었다. 호적상의 지역별 호구수를 비총제적으로 유지하면서 내부에서 그 수를 충족시킬 호구를 편제토록 한 것이다. 개별 호구의 등재여부는 동리 내부의 자율에 맡겨지기도 했다.

제주 대정현의 여러 지역에서는 19세기 중엽을 전후로 호수를 고정시키는 반면에 구수를 증대시키는 호구현상이 여러 연구로 보고되었다.⁷⁾ 제주의 이러한 호구 현상은 중앙상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세 수취가 제주에서는 시행될 수 없었고, 상대적으로 환곡을 위시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호적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구과약이 치밀하며 다른 지역과 달리 호마다 차등을 두는 등의 호구운영 방법이 실시되고 있었다.

부세 가운데 토지재원에 비해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재원운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구조상 정규의 조세상납 부문에 비해 지방재정운영에 의지한 비정규의 재정부문이 클 수밖에 없었다. 변방의 해양방위를 위한 군역 및 노역의 수요와 호구를 대상으로 하는 환곡운영 등에 지방관

5)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6) 손병규, 「호적대장 직역란의 군역 기제와 '도이상'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7)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의 편제와 성격」, 『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표 1〉 1888~1912년 사이의 전국과 하모리의 호구총수와 호당구수의 변화

전국의 호구총수				하모리의 호구총수			
연도	호수	구수	호당구수	연도	호수(호)	구수	호당구수
1888	1584794	6650077	4.2	1888	149	1013	6.8
1891	1576672	6633166	4.2	1894	145	986	6.8
1897	1332501	5198248	3.9	1898	233	862	3.7
1899	1357037	5340901	3.9	1899	225	869	3.9
1900	1397630	5608151	4.0	1900	218	887	4.1
1901	1409344	5713244	4.1	1901	219	887	4.1
1902	1405116	5782860	4.1	1902	204	874	4.3
1903	1418530	5891595	4.2	1903	202	879	4.4
1904	1374969	5629487	4.1	1904	211	862	4.1
				1905	210	862	4.1
1906	2333087	9781671	4.2	1906	210	842	4.0
				1907	307	843	2.7

* 전국규모의 호구총수는 왕조실록 및 관보, 공안에서 확인한 수치이며, 하모리의 호구수는 제주 하모리 호적증초 이상조의 수치이다.

청의 재무가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지방재정의 자체경비 수요도 높아서 그러한 재원의 확보에도 호구과약은 가장 중요한 재정업무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만큼 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징수를 위해 부세부담의 형평성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만 했을 것이다.

재원이 호구과약에 집중하자 가장 부담이 적은 형태로 호구를 편제하려는 노력이 제주 주민들로부터 시도되었으며, 호구과약의 공정성 여부에도 민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구과약을 향촌내부의 자율적 조정에만 의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지방관청이 개입한 호적의 공식적인 활용이 요구됨과 동시에 호구과약 방법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호수가 비총제의 적용으로 고정화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경제규모로 호를 편성하고 그 규모에 따라 호마다 차등성을 두는 방안이 시행되었다. 호적상에 더 많은 인구가 확보된 것

은 호구수취의 증대를 피하는 노력의 결과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경제력과 호구과약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호구에 대한 징수방법은 호의 등급화와 등급의 치밀화 뿐만 아니라 개별 인구에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口稅의 추징까지 조합하는 복잡한 것이었다.⁸⁾

제주 지역의 호구과약이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에서는 호적상의 호구에 따라 면리 단위로 부세부담을 배분함으로써 하부 행정단위의 호구과약을 자율에 맡기거나, 지방사회 내부의 현실적인 호구과약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중앙에 대한 보고용의 호구과약을 이중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⁹⁾ 제주 대정현의 경우에는 그러한 호구과약과 부세부담의 배분이 里(전국일반의 관점에서 面의 위상)단위의 호적중초로 일원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방관청에서 중앙으로 호구총수를 보고할 때에는 단지 호당구수를 예년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원칙만이 지켜지고 있었다. 광무시기 제주 하모리의 호구총수는 호수를 증대시키는 대신에 호당구수를 전국규모의 수치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까지 높은 수준으로 확보해온 구수를 조금씩 낮추어 가고 있었다. 구수의 과약에 있어 19세기 후반의 제주만의 특성을 지속시킴으로써, 중앙의 호구정책에 대응하여 호수를 일거에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제주에서는 계속해서 광무호적이 호적표가 아닌 장적의 형태로 작성되었다. 호적표는 호구단자의 형식을 이은 것으로, 통호주소에 따라 낱장이 모여져서 하나의 책자가 된다.¹⁰⁾ 호적대장은 면리를 단위로 준비된 장부에 호구를 연이어 기재하는 호구과약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래의 호구과약

8) 허원영, 「19세기 제주지역의 호구기록과 부세제도—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회 동아시아학술원 공동주최 '조선후기 인구와 가족의 이해' 학술회의 발표문, 2004.12

9)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단성 배양리와 제주 덕수리의 사례」, 『대동문화연구』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10) 「慶尙南道丹城郡戶籍表」, 『경상도단성현사회자료집』 권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방법이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보고용의 책자로 묶여 있어 유동적인 호구의 현실적 파악이 어려웠다. 또한 고정적인 호구총수의 보고에 대해 이는 호적작성 과정에 지방관청의 호적담당 사무자들이 개입하여 이권을 챙기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광무호적은 호마다 낱장으로 기재할 뿐 아니라 중간의 농간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관에 신고케 하는 문서였다. 호구누락을 위시한 지방사회 내부의 중간 조작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3년에 한번 실시하던 호구조시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행토록하여 더욱 치밀한 호구파악을 획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호구운영에 관한 지역의 독자성이 강했으며, 더구나 거리상 중앙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점에 따라 여전히 종전의 방법으로 호구를 파악하였다. 특히 호수의 증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제주의 호구운영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부세의 균세적 배분을 위해 오랫동안 호구파악과 호구운영의 방법을 숙달해 왔다는 점이 광무 시기 이후의 호구정책에 대해 제주 대정현이 쉽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호를 소규모 경제단위로 세분화하여 호단위 부세부담의 균등성을 현실화하기 쉬웠다는 말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호구파악이 부세운영과 관련된 것인 이상, 제주에서는 더 많은 인구의 확보를 스스로 획책하지는 않았다. 다른 지역의 광무호적 작성이 지금까지 누락시켜 왔던 연소자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제주에서는 호당구수에 맞추어 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인구의 확보가 중용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광무호적의 호구규모가 소가족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다하여도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가족의 가계경영단위와 일치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언제든지 호구정책에 따라 호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파악된 호의 규모가 조선의 구호적에 비해서 세대의 실제 규모에 접근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¹¹⁾ 그러나 어느 정도로 접근해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11) 정진영, 「조선 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통감부가 난관에 부딪힌 호세운영을 극복함과 동시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세조사'를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호구과약의 과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광무호적에 대신해서 1909년에 시도된 새로운 호구과약 방법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조선의 호구과약 방법에 기초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다.¹²⁾

Ⅲ. 민적부의 작성시기와 자료현황

민적은 호마다 '本籍' 주소와 '戶主' 사항을 등치시키고 그 뒤로 호주와의 관계인 '身位'를 매개로 나머지 호구성원들을 등재한다. 호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姓名'을 기재하고, 성명의 오른쪽에는 부모의 이름과 그로부터 몇 번째 자녀인가를 나타내는 '出生別'과 본관을 기재하며, 왼쪽에는 '出生月日'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상단에 입적 및 제적의 '事由'를 기재한다. 여기에 호주에게는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前戶主와 '戶主된 原因及其年月日'이 별도로 기록된다.

이러한 개별호의 민적들을 하나의 장부로 묶어놓은 것이 민적부이다. 제주 대정면 하모리 주민을 대상으로 작성된 세 권의 민적부—그것을 각각 민적부A, '민적부B', '민적부C'라 하자—는 각각 300호에 가까운 민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각 민적부는 동일지역의 주민에 대해 작성하면서도 하나의 장부로 정리한 시기는 서로 다르다.

민적부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당시의 현존하는 호구 구성으로 하나의 민적을 성립시킨 시기와 그러한 호들을 일련의 통호번호나 번지수로 재편하여 하나의 장부로 묶은 시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민적부가 하나의 장부로 정리되기까지 각 호가 '민적의 호'로 성립하거나 재구성되는 시기는 각 호마

12) 李英美, 「韓國近代戶籍關聯法規の制定及び改正過程—民籍法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6, 日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2004.

다 다르다. 민적은 광무시기의 ‘호적표’와 같이 호마다 별도로 작성하여 하나의 책자로 묶었지만, 호적표를 정기적으로 일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전호주의 호 자체를 제적시키고 그 호를 계승하는 형태로 현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를 다시 써서 그 자리에 끼워넣는 것이 원칙이다.

각 민적에 기재된 ‘호주된 원인 및 시기’는 호주의 변경에 따라 새롭게 민적을 작성한 시기를 알려준다. 또한 기타 호구변동의 시기 기록은 민적부가 재작성된 이후로 언제까지 그 민적부가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제주도 민적부는 하나의 장부로 작성된 이후에 호구의 변동사항을 각 민적 위에 첨서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민적부A의 첫 장인 1통10호의 ‘전호주’란에는 전호주의 성명과 함께 ‘分家라 쓰고 ‘호주가 된 원인과 시기’란에는 ‘前戶主○○○死亡에 因호야 開國五百年一月一日 戶主 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호는 1891년에 전호주인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누군가 그 호를 계승하고 현호주는 그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호를 형성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현호주가 새롭게 민적을 작성한 시기는 1851년부터 1912년 4월에 이른다.¹³⁾ 이것은 1909년 이후에 기존의 호적과 다른 형태로 민적을 작성할 때에도 구래의 호적을 참고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1912년 4월 직후에 민적부A를 작성하였음을 말한다. 민적부A의 통호번

〈표 2〉 민적부의 호구변동 시기에 대한 기록범위

연도기록사항		민적부 A	민적부 B	민적부 C
호	호주된 시기	1851~1912년(4월)	1851~1923년	1851~1925년
구	출생	1807~1916년(4월)	1807~1923년(11월)	1829~1926년
	사망	1909~1917년(6월)	1913(6월)~1923년	1920~1926년
	이래이거	1909~1915년(10월)	1913~1923년	-
	혼인(出嫁)	1816~1917년(5월)	1841~1923년	1910~1924년

13) 민적부A의 12통 8호에는 호주된 원인과 시기를 ‘分家 明治45年(1912) 4月 10日’로 기재하고 있다.

호는 대부분 기존의 통호번호에 새로운 통호번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재되었다. 민적이 처음 작성되는 1909년부터 1912년 4월 이후의 어느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현존하는 민적에 대해 일련의 통호번호를 다시 부가한 것이다.

민적부A는 광무호적과 같이 10개호를 1통으로 하여 통호번호를 열거하고 있다. 민적부A는 1통1호가 뒤에 끼워져 있고 1통10호부터 시작되는데, 통호번호의 순서가 뒤섞인 경우가 있으나 3통10호가 결락된 것을 제외하고 2통(호)까지 통호번호가 빠짐없이 남아있다. 후술하듯이 민적부A를 1900년대의 광무호적과 민적부B로 대조해보면 앞쪽의 8개호와 뒤쪽 여러 호의 민적은 보관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하는 민적에는 통호번호가 같은 4호¹⁴⁾가 섞여 있는데, 이것은 일련의 통호번호를 확정된 이후에 새롭게 첨가된 호들로 여겨진다.

민적부A가 1912년 4월 이후의 어느 때에 새로운 통호번호로 정리된 이후에 이 민적부가 어느 시점까지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은 기타의 호구변동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호 구성원의 출생, 사망, 이래이거 혼인을 기록한 시기는 1807년부터 1917년까지 나타난다. 개별 구성원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1909년 이후의 민적조사는 기존의 호적을 참고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민적부A가 1917년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한두 해의 기록은 민적부B의 작성시기와 두 장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민적부B는 장부 결장에는 ‘大正四年 民籍簿, 즉 1915년 단계의 민적이 하나의 장부로 묶여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09년 이후의 민적에 새로 정리된 통호번호를 덧붙인 민적부A와는 달리 민적부B는 통호번호를 수정한 흔적이 없다. 또한 민적부B의 통호번호는 민적부A에서 확정된 통호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괄적으로 통호번호가 재조정되었다. 민적부B는 1915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하모리의 현존하는 민적을 일괄적으로 새롭게 작성한 장부라 할 수 있다. 민적부A가 현존할 수 있었던 것은 민적부B로 민적이 새롭게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14) 중첩된 통호번호는 2통10호, 5통3호, 8통7호, 12통8호이다.

일련의 통호번호로 새롭게 정리된 민적은 이후 호주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호주의 이름을 삭제하고 호내구성원 가운데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의 '身位(호내위상)'에 '戶主'라고 첨서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호주된 원인과 시기를 기재하였는데, 이렇게 호주의 변동을 기록한 시기는 1923년에 이른다. 이것은 동일 민적 내에서 호주가 계승된 경우이다.

민적부B의 민적은 1통1호부터 31통1호까지 정연하게 통호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중간 중간에 14개호가 누락되어 있는 반면, 4호는 통호번호가 중첩되고 거기에 통호번호가 없는 7개호가 존재한다.¹⁵⁾ 이 또한 민적부B가 일련의 통호번호로 작성된 이후 호 자체가 누락, 첨가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호주 변동 뿐만 아니라 호구성원의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태이거 시기에 대한 기록도 모두 1923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를 최후로 또 다시 민적부C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적부A는 1912년이나 그 직후에, 민적부B는 1915년 직후에 일련의 통호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민적부A에는 호구성원의 변동 사항이 1917년까지 기록되고 있으며, 민적부B에는 호구성원이 사망과 移居로 삭제되는 기록이 19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민적부A에는 호구성원의 변동사항이 1915년까지 매해 상당수 기록되어 있으나, 1916년과 1917년에 1명의 출생과 3명 여성의 출가, 그리고 3명의 사망에 관한 기록이 보일 뿐이다. 반면에 민적부B에는 1916년과 1917년의 호구 변동사항이 상당수 기재된다. 또한 민적부B에 보이는 1913년과 1914년의 호구변동 사항은 대부분 민적부A에도 중첩하여 기록되어 있다. 말하자면 민적부B가 작성된 이후에도 한동안 일부의 호구성원 변동사항에 대해 민적부A를 병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적부B를 일괄적으로 재작성할 때에 민적부A에서 확인되는 1913년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일련의 통호번호로 재정리한 1912년경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적부A에서 1916년과 1917년의 기록을 보이는 7명 가운데 3명은 민적부B에 더 이상 등재되지 않았다. 1916년 이후의 변동사항을 민적부A에 기록한

15) 결락된 통호번호는 7-9, 8-3, 8-4, 10-3, 10-4, 11-10, 12-1, 14-5, 23-6, 28-4이다.

것은 민적부B를 작성할 때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을 등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나머지 4명은 민적부B에도 등재되었는데, 변동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민적부B에서 호구성원 변동사항이 1913년부터 기록된 것도 있다는 것은 후술하듯이 모든 호구를 파악해두고자 하는 민적부B 작성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민적부B에는 통호번호와 함께 地番이 병기되어 있다. 지번은 토지의 한 필지에 붙여지는 것으로 호의 地番은 家堡의 번호가 된다. 호에 대한 번지수가 아니라 가대에 대한 번지수이다. 따라서 하나의 지번 = 가대에 두세 개의 호나 가옥이 성립할 수 있다. 초기에 통호번호를 부여받은 호들 가운데 22개의 지번에는 호가 두 개씩 존재하며 1개 지번에는 세 개의 호가 존재한다.

통호번호순으로 지번을 살펴보면, 대략 1~2통은 1400번대, 3~4통은 1200번대, 5~7통은 1100번대, 8~10통은 1000번대, 11~12통은 900번대, 13~14통은 800번대와 900번대가 섞여 있는 식으로 통호번호와 지번이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18통은 900번대에서 시작하여 19~20통은 1100번대, 21~25통은 1400번대에 1500번대가 섞여 있는 식으로 다시 순방향으로 진행되어 원점 가까이로 돌아온다. 그러다가 26~27통은 800번대, 28통은 900번대로 뛰어넘고, 29통 이후로는 100번대와 200번대가 섞여있다. 통호번호는 하모리 지역을 일순한 다음 다시 돌아서서 진행되는 도중에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번은 민적부A와 동일하며, 광무호적에서도 22통까지 대체적으로 비슷한 진행방향을 보인다.

한편, 민적부B의 21개의 호는 지번이 없다. 이 호들은 민적부B가 작성된 이후 지번이 부여되기까지 현실적으로 사라진 호들이다. 이 가운데 2호는 '絶家'하였다가 민적부C에서 다시 호를 회복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호에 '合戶'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移居'하여 민적부C에서도 호를 형성하지 못한다. 또한 특이한 것은 '원적(原籍)'이 별도로 존재하는 호가 14호나 된다는 점이다. 이 호들은 민적부B가 작성될 당초에 하나의 호로서 존재하나 이미 부모의 호에 합호하거나 별도로 호를 세우고 있는 상태로써 주로 호주 1인만이 등재된 독호이다. 이것도 민적부B의 특성과 관련하여 뒤에 상술하도록 한다.

민적부C의 각호 민적에는 통호번호가 없고 지번만 존재한다. 민적부B는

10호를 1 통으로 등재하는 광무시기와 호번 관례를 지속시키고 뒷 시기에 지번을 병기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민적부C에서는 그러한 통호의 편성을 포기하고 대지 지번에 따른 호구파악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민적부C는 번지수 순으로 호가 묶여져서 통호순으로 묶은 민적부A, B와 각호 민적의 순서가 달라지나, 민적부C의 번지수는 민적부B와 동일한 호의 번지수와 거의 일치한다.

민적부C의 작성시기는 민적부B의 마지막 호구변동 기록을 보이는 1923년이나 그 직후가 된다. 이후 호의 변동은 1925년, 호구성원의 변동 사항은 1926년까지 이어진다. 민적부C가 작성될 당초부터 1926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호에서 분호하여 독립호를 형성하거나 민적부B에 존재하지 않던 호구가 새로이 파악되고 있다. 민적부C에서도 한 지번에 여러 호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28개 지번에서 두 개씩의 호가 존재하며 6개 지번에서 세 개씩의 호가 존재한다. 민적부B와 비교하여 이러한 사례가 증가한 셈이다. 이것은 민적부B와 별도로 민적부C를 작성함으로써 더욱 치밀하게 호구를 파악한 결과이다.

민적부A, B, C가 일괄적으로 작성된 시기는 각각 1912년 직후, 1915년 직후, 1923년 직후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 민적부는 작성되는 당초의 각호 민적 가운데 이거, 절가 등으로 호 자체가 제적되거나 보관상 이유로 분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호가 있는 반면에 새로이 등장하여 통호번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호들이 첨가되어 자료상의 현존 호수를 남기고 있다. 위에서 통호번호를 통해 파악한 호수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각 민적부 자료의 현존 호수

민적부	작성당시 호수	결락	통호번호중첩	통호 무번	현존 호수	부적호
민적부 A	277 호(301 호)	(20 호)	4호	0호	281 호(301호)	18호
민적부 B	287 호(301 호)	(14 호)	3호	7호	297 호<277호>	13호
민적부 C	-	-	-	-	294호	7호

* ()는 민적자료의 결락을 감안하여 산정한 호수이다

* 민적부B의 < >는 중복등재된 호, 즉 '동리원적번호'를 제외한 호수이다.

* 부적호는 附籍이 부록된 호수를 말한다

민적부A는 작성당시에 민적부B와 같이 31통1호까지 존재했다면 이삼 년 사이에 탈락한 호와 자료상에 낙장 된 호를 포함하여 20호가 결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4호가 첨가되어 민적부B가 작성되기 직전에 민적부A에는 281호가 남았다. 낙장 되지 않았다면 약 300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민적부B는 301호로 파악되었다. 이후 8년 사이에 14호가 소멸되고 10호가 새로이 파악되어 297호가 현존한다. 그러나 이 호수에는 원적에 중복하여 등재된 20호의 '원적본호'가 포함되어 있다. 중복된 호를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277호가 남는 셈이다.

민적부C는 통호번호가 없어 현존 호수 294호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작성당시의 호수를 추정하기 어렵다. 단지 이때의 민적부 C에는 민적부 B에서 중복 등재되었던 호를 제거하고 파악하였으므로 작성 당시에 270여호를 파악했을 것이다. 여기에 이삼 년 동안 10여 호가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적부의 현존호수 상황은 민적부가 새로이 작성될 때마다 취해진 호구파악의 정책적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시기별 호주의 변동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Ⅳ. 호주 변동과 민적 파악의 추이

1. 광무호적에서 민적부로

민적부A는 1909년부터 실시된 민적조사를 1912년경에 일련의 통호번호로 재정리하고 이후 민적부B가 재작성 되는 1915년 직후까지 변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호번호에 준하여 민적부B와 대조하여 낙장 된 호들을 고려하면 1912년경 제주 하모리에서 파악한 민적은 300호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현존하는 마지막 광무호적, 1907년의 하모리 호수와 거의 같다. 그렇다면 광무호적과 민적부 사이에 호수의 변동은 없었는가?

민적부B에서 민적부A의 결락부분을 보완하여 각 호 호주의 출처를 광무호

적과 비교해보면 민적부는 광무호적에서 파악된 하모리 전지역의 호구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는지 기존의 하모리 지역 가운데 일부는 민적부에 파악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광무호적에 등재된 호구로부터 분호하거나 숨겨져 있던 호들이 새롭게 파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슷한 호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민적부A와 민적부B에서 파악된 1통1호에서 31통1호까지의 호주는 1907년 광무호적의 1통에서 22통에 등재된 호구들과 동일하거나 그 형제, 혹은 직계 자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3통부터 31통까지 40여 호의 광무호적 가운데에는 단지 5개호의 호구만이 이후의 민적으로 파악될 뿐이다. 따라서 광무호적 단계의 호수파악에 비해 더 많은 호가 민적부에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적으로 파악된 호주가 광무호적에 등재된 호구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민적으로 파악된 호주가 광무호적에 등재된 호구의 호주와 일치하거나 호구성원 가운데에서 호주를 승계, 혹은 분호한 경우는 민적부 전체 호수의 66%에 머무른다. 그런데 광무호적에 누락되었지만 광무호적에 등재된 호구의 형제나 자식, 손자 등으로 확인되는 자들이 민적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파악되었다. 여기에 더해 광무호적 등재 호구와 친척관계를 갖지 않고 하모리에 거주하면서도 광무호적에 누락되었던 호구들을 고려하면 광무호적 누락호구

<표 4> 민적부A 호주의 광무호적 등재호구와의 관계

광무호적 등재호구와의 관계	민적부A의 현존호주	결락(민적부B 에서 보완)	계	(%)
호주가 동일한 경우	157	8	165	(55%)
구성원이 호를 승계한 경우	9		9	(3%)
구성원이 분호한 경우	21	2	23	(8%)
누락호구(등재자의 형제 직계후손)	54	3	57	(19%)
1908~1912년에 이래한 호	6		6	(2%)
불명	34	7	41	(14%)
계	281	20	301	(100%)

* 1907년의 광무호적과 비교하였으나 누락호구에는 1904~6년에 등재된 호구도 포함된다

로서 민적조사로 새롭게 파악할 수 있었던 호주는 전체 민적의 20%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것이 분명한 호는 하모리 광무호적의 파악대상에서 제외되었겠지만, 광무호적에 등재된 호구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민적 호주들 가운데에는 광무호적 작성 당시 하모리에 거주했던 자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민적은 기존의 호를 분호하는 과정에서 확보되었다. 민적부A의 현존 민적에서 호주된 원인을 시기별로 계산하면 <표 5>과 같다. 여기서 '사망'이란 전호주의 사망으로 호내 구성원이 호를 승계한 것을 말한다.

민적부A에서 현호주가 호를 계승하거나 기존의 호로부터 분리한 시기는 185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광무시기에는 광무호적이 작성되기 시작하는 1897년과 하모리의 마지막 광무호적이 현존하는 1907년에 전후시기

<표 5> 민적부A의 호주된 원인의 시기별 기록

시기	사망	분호	분가	임시분가	임시호주	무기재	계
1851~1894	25		2	1			28
1895			1				1
1897	18	1	3				22
1898	3						3
1899	4	1					5
1900	2	1	1				4
1901	2	1	2				5
1904	1						1
1905	2		1				3
1906	4		2				6
1907	8	2	10				20
1908	2		3				5
1909	69	2	24	1		1	97
1910	10		4	1			15
1911	14	6	17	14	1	1	53
1912	3		2	1	1		7
무기재						6	6
계	167	14	72	18	2	8	281

보다 월등한 호주의 변동이 발견된다. 두 시기 호적의 호수 증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민적이 작성되기 시작하는 1909년에는 광무호적의 두 시기보다 5배에 가까운 호주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시기에 전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승계가 특히 많은 것으로부터 당시에 사망하는 호주가 많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민적에 호주된 원인과 시기가 모든 광무호적을 일일이 대조하여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 단적인 예로 1909년에 사망으로 인한 호주승계가 69명인데, 그 가운데 1907년에 이미 호주로 존재하던 자들이 58명이나 되며 실제로 이때에 호주승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는 4명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된 원인과 시기에 대한 1909년 이후의 수치는 민적조사가 이루어지는 초기로서의 기록상의 문제와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통호번호로 민적부A가 재정리되기 직전인 1911년에는 전호주의 사망에 의한 호주승계보다 '분호', '분가', '임시분가' 등으로 인한 호주변경이 많다. 이러한 원인을 가진 1911년의 호주는 모두 38명인데, 그 가운데 광무호적에 누락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자들이 24명이다. 이 사람들은 분호의 형식을 빌어 민적으로 새롭게 파악되었다고 보여 진다.

'분호'와 '분가'는 같은 내용이지만 민적부B와 C에서 '분호'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분호'는 광무호적의 호구 개념에 준하여 사용된 듯하다. 이에 대해 '분가'라는 표시는 기존 호적의 '호' 개념이 아니라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의 개념으로 민적을 조사하고자 한 의도를 시사한다. '임시분가'나 '임시호주'도 '분가'나 '분호'에 해당하는데, 부가 생존함에도 불구하고 호를 계승해야 할 장남이 분호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¹⁶⁾ '임시분가'

16) <표> 민적부A 민적의 호주된 원인별 전호주와의 관계

전호주와의 관계	사망	분호	분가	임시분가	임시호주	무기재	계
장남	121	5	17	11	1		155
2~4남	37	5	26		1	1	70
장손	1		2	1			4
2~3남의 장남	1		3	2			6
차손		1	1				2
형제와 생질	3		16	1			20
처	3						3
손부			1				1
무기재	1	2	6	4		7	20
계	167	13	72	19	2	8	281

의 기록이 특히 1911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민적조사의 당시 의도가 소규모 가족 단위의 임시적인 '분가'를 통한 인구과약의 증강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1907년의 광무호적과 민적부A의 현존호를 대조하면, 그 사이에 호주계승과 분호를 행한 사례는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5호, 21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호를 잘게 분할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1907년 광무호적에서 각각 독립호를 형성하던 호주가 민적부A에서 하나의 호로 합호한 경우도 6호가 발견된다. 이 호주들이 전호주나 합호하는 호의 호주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은 이 시기 분호, 합호의 성격을 드러낸다.

1907년 광무호적에서 민적부A 사이에 기존의 호를 승계하는 사례는 전호주의 장남이 가장 많으며, 2남이 승계하는 경우도 3호 나타난다. 기존의 호로부터 분호하는 사례의 특징은 부가 생존함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사망을 기다려 호를 계승하기 전에 분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합호하는 경우는 이미 분호했던 호가 다시 부모나 형의 호로 합호하는 경우가 3사례, 홀로된 어머니가 아들의 호로 합호하거나 첩실이 지아버의 호로 합호하는 경우가 각각 1사례씩, 그리고 특이하게도 독립호를 구성하고 있다가 다른 호의 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1사례 있다. 광무호적에는 많은 호구를 등재에서 누락시키면서도 여성이나 독립호를 구성하기 어려운 자를 호주로 세우는

<표 6> 1907년 광무호적에서 민적부A로의 호주변동에 따른 호주간의 관계

전호주와의 관계	호주승계	분호	합호호주와의 관계	합호
장남	6	9	장남	1
2남	3	3	장손	1
3~4남		3	제	1
2남의 장자		1	母	1
제		3	첩	1
불명		2	附籍	1
계	9	21	계	6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분호, 합호 성격은 민적부 A에서 민적부B, 민적부B에서 민적부C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분호 및 합호의 성격 과도 대비된다.

2. 민적부 재작성 과정의 호구파악

민적부B가 일련의 통호번호로 재정리되기 직전에 민적부A는 약 300호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20호 정도의 자료상의 결락으로 인해 281호가 현존한다. 작성당시의 민적부B는 301호이나 자료상 결락된 14호를 제외하고 287호가 현존한다. 상호간에 시간적 간격이 짧고 총호수에도 그다지 큰 변화가 없으나 그 내부에는 격심한 호의 재편성이 시행되었다.

당시의 현황호수로만 살펴볼 때, 민적부B가 작성되는 시기의 가장 큰 호주 변동은 1909년에 민적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분호현상과는 반대로 대대적인 합호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합호의 방법은 민적부B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합호하는 호들 가운데 11호는 합호와 동시에 기존의 호가 소멸한다. 그러나 18호는 호구성원 모두가 민적상 호를 옮겨가버리지만, 기존의 호주가 홀로 남아 통호번호를 부여받아 호를 유지시키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이 호주는 합호하는 호에 중복 등재되는데, 이러한 독호 호주들의 '事由'에는

〈표 7〉 민적부A에서 민적부B로의 호주변동 상황

민적부A(현존호수)		281호	동리원적분호
유지	동일호주	212호	
	호주승계	24호	
감소	합호	11호	18호
	이거	2호	
	탈락	14호	
증가	附籍의 호주승격	3호	
	불명	10호	2호
민적부B(결락 14호 제외)		267호	20호

〈표 8〉 민적부A에서 민적부B로의 호주변동에 따른 호주간의 관계

전호주와의 관계	호주승계	합호호주와의 관계	합호	동리원적본호의 합호
장남	18	장남	6	16
장손	2	장손	1	1
양자	1	父	3	
2남	1	모	1	
3남	1	제	1	
종형	1	婦		1
계	24	계	11	18

가령 '原籍 소里 ○統○戶 李○○ 長男으로 本戶에 居住 ʼ라고 기재하여 같은 마을의 '원적'에 합호하나 기존의 '본호'에 거주함을 밝히고 있다(이것을 '동리원적본호'라 부르기로 한다). 다른 호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통호번호를 부여받고 있지만 성격을 달리하는 호가 형성된 것이다.

전호주의 사망 등으로 호주를 계승하는 자는 여전히 장남, 장손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합호하는 호주들은 민적작성 초기에 ʼ가 생존해도 분호 하던 장남들이 다시 부모의 호로 합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동리원적본호의 경우는 대부분 그러하다. 또한 생존하는 ʼ가 자식의 호로 합호하는 경우도 3건 보인다 이렇게 성격을 달리하는 호를 병존시키면서 하나의 호에 복합 가족을 재조합하는 경향은 민적부B를 정리하는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민적부B를 작성한 이후 민적부C가 다시 작성되기까지 7~8년 동안에 합호의 현상은 두 건에 머무른다. 그에 반해 다시 분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분호경향은 호주승계와 더불어 민적작성 초기의 그것과 또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

민적부B의 작성 이후 민적부C의 작성에 이르는 동안에 전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의 승계는 여전히 장남, 장손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전호주와의 관계가 다양한 친인척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ʼ에게 호주가 계승되는 사례는 사망으로 인한 호주계승이 아니라 ʼ가 자식의 호에

〈표 9〉 민적부B, C의 호주변동 상황

민적부B(동리원적본호 제외)		267호
유지	동일호주	196호
	호주승계	50호
	절가유지	1호
감소	합호	2호
	이거	1호
	탈락	15호
	타지원적본호	2호
증가	분호	13호
	附籍의 호주승격	5호
	이래	2호
	불명	27호
민적부 C		294호

〈표 10〉 민적부B에서 민적부C로의 호주변동에 따른 호주간의 관계

전호주와의 관계	호주승계	분호	합호호주와의 관계	합호
장남	34		장남	1
장손	5		父	1
양자	1			
2~4남	1	2		
父	2			
형제		7		
종제, 질		2		
처	5			
손부		1		
2녀	1			
매	1			
처질		1		
계	50	13	계	2

구성원으로 존재하다가 자식에 대신해서 호주가 된 경우이다. 합호의 경우에도 독립호를 형성하던 아버지가 자식의 호에 합호하는 사례가 있는 것과 같이 가족의 연장자를 중심으로 대가족을 형성하는 호구성의 특징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이 사망하여 그 처에게 호주를 계승하는 것은 역시 연장자가 해당 호의 실질적인 가독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딸이나 누이에게 호주를 상속하는 사례는 그녀들의 어떠한 사정으로 부계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경우인 듯하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생존함에도 불구하고 장남이나 장손이 분호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형제 및 기타 방계친족이 기존의 호로부터 분호하는 현상은 그들 독자의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것은 기왕에 진행되었던 합호의 의도를 한걸음 더 진행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호의 구성을 직계혈연으로 온전하게 파악하려는 의도와 함께, 민에 대한 파악을 일률화하려는 시도로도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민적부A에서 민적부B, 민적부B에서 민적부C로의 호주변동에서 附籍에 기재되어 있던 자가 정식으로 통호번호를 부여받아 호주가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광무호적에는 ‘寄口’나 ‘雇男’을 호적표의 한켠에 그 남녀 인명수만을 쓰도록 하였는데, 민적부A에는 이것을 여전히 ‘附籍’에 대신하는 용어로 혼동하여 사용한 경우가 있다. 1909년에 민적법이 시행되었을 때, 독자적인 호를 구성할 ‘能力’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을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파악과 보호를 주인 호에 맡겼다.

그런데 부적에 등재되었던 자들이 1915년 직후의 민적부B를 작성하면서 이미 하나의 호로서 통호번호를 부여받기 시작했으며, 이후로도 지번을 부여받아 독립호로 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1913년 이후의 민적법 개정과정에서 이들을 염두에 두었던 ‘能力’ 조항이 삭제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끝으로 민적부B에서 민적부C로의 호주변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타지원적분호’의 소멸이다. 이 기간 동안에 통호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파악되었다가 사라져버리는 3사례를 더하여 ‘타지원적분호’는 5사례가 발견된다. 이것은 동리에 원적이 있는 동리원적분호와 마찬가지로 원적이 멀리 타지에 있으면서 하모리에 거주하여 원적과 거주호가 분리된 경우이다.

民籍謄本下附申請

本籍 濟州島大靜面下幕里
 現住所 全上 戶主 李○得
 一、手數料金五錢也
 右者ニ對スル民籍謄本一通を御下附相成度此段及奉願候也
 大正拾二年五月二拾日 右願人 李 ○得
 大靜面長 展
 (뒷장)
 壹千三拾六蕃地
 本 全州 前戶主 分家ニ因リ大正五年三月八日戶主ナル
 父 宗○ 母 李氏 出生別 貳男
 姓名 李○得
 生年月日 文久三年拾一月拾九日

1923년에 대정면장 앞으로 '民籍謄本'의 발급을 신청하는 문서가 민적부B에 끼워져 있다. 뒷장에는 호주에 대한 민적등본이 쓰여 있다. 이 자는 민적부B에 附籍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가 1916년에 가족과 함께 '분호'함으로써 정식의 호를 성립시켰다. 본래 부적으로 등재되었던 민적을 사용하여 그 자의 '事由'란에 1036번지의 번지수를 기재하고 8통7호로 통호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민적등본의 발급은 부적에서 정식의 호로 승급한 뒤에 그에 대한 확인차 신청된 것으로 보인다.

민적등본 신청서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本籍'과 '現住所'의 구분이다. 민적부 상으로는 별도로 현주소를 쓰는 난이 없는데 반해 신청서에는 본적에 대해 '현주소'가 기재되고 있다. 또한 민적부B에는 본적란에 번지수와 함께 통호번호가 적히나, 민적등본에는 번지수밖에 옮겨 적지 않았다. 1923년 당시에 이미 통호번호는 방기되었기 때문이다.

민적부B 책자에는 '거주신고서'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문서가 발견된다. 1922년 하모리 구장에게 제출된 이 문서도 '본적'이 타지에 있으면서 '현주소'를

居 住 届

本籍 全羅南道務安郡二老面上里四拾四番地
 現住所 濟州島大靜面下幕里千拾七番地
 戶主 梁○仁 明治拾五年二月一日生
 妻 姜○圓 明治二拾五年三月三日生
 長男 梁○根 明治四拾四年五月二拾五日生
 …… (중략) ……
 右ホ御届候也
 大正拾一年拾二月拾五日 右願人 梁○仁
 下幕里區長 殿

하모리로 하고 있다. 민적부B에서 '동리원적본호'나 '타지원적본호'가 '原籍'에 대해 '本戶'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민적등본이나 거주신고서에 '본적'에 대해 '현주소'를 구분하는 것은 동일한 주소 기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호들은 민적부C에서 대부분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이들 호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거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민적부C에서는 이제 민적상의 주소인 '본적'이 현주소로서의 '본호'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출신 본거지를 나타내는 '원적'의 의미로 일원화된 것이다. 민적부B의 원적과 본호의 병존 현상은 현거주자의 주민등록적인 성격—現住地主義—으로부터 출신지에 근거한 인구등록—本籍地主義—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거주신고서를 제출한 호는 민적부C에 다른 호들과 나란히 등재되었다. 본적을 현주소지로 옮긴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민적부의 본적에는 현주소지가 쓰여 있다. 민적부C는 여전히 본적과 현주소가 모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민적부C가 작성된 이후의 호주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제적된 호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호하는 현상이 보이는 한편, 여전히 거주지를 옮겨오는 호가 등재되고 있다. 민적부C에 더 이상 원적과 본호를 구분하거나 민적의 중복 등재는 보이지 않으나 민적은 호를 구성하는 두 가지 관념의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민적부C가 1925년을 끝으로 더 이상 사

용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V. 민적법 시행기의 호구파악

민적조사가 시작되던 1909년에 경상도 안동 천전리의 한 유지는 그의 일기에 민적조사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날 戶籍 일로 드디어 친척 원로들이 우리 집에 모였다. 용지는 인쇄한 것이며 서식에는 四祖가 적히지 않는다. 그러나 主戶 이하 모두에게 생년월일을 쓰고 또 아녀자의 이름도 쓴다(각주: 主戶의 어머니 이름도 쓰는데, 어머니가 있으면 외조부모명도 쓴다. 처와 처의 부모명도 쓰며, 며느리와 며느리의 부모명도 쓴다). 아아, 옛 법규는 사라지고 새로운 규례가 등장했구나.¹⁷⁾ (강조는 인용자)

광무호적이 작성되던 때에도 지방에서는 예전과 같이 향회에서 그 지역의 호적작성을 총괄했다.¹⁸⁾ 향회는 호수의 증대를 중용하는 정부에 대해 새롭게 파악된 호구 가운데 일부분을 구호적 시기의 호총에 맞추어 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적이 작성되는 1909년에도 지방에서는 마을 단위로 회의를 열어 민적조사에 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리 단위로 민적부가 현존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 동리의 원로는 민적을 ‘호적’이라 인식하고 더구나 광무호적 단계부터 사용하던 ‘戶主’에 대해 여전히 구호적 시기의 ‘主戶’라는 용어를

17) 柳泳熙, 『농포일기』(陰陽錄),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1909년 6월 25일, “是日方以戶籍事, 諸族祖會於吾家, 紙用刻印, 而書式則不書四祖, 但書主戶者以下, 各俱生年月日, 又書婦人名(主戶者母名, 母在則又書外祖父母名, 妻名及妻父母名, 子婦名及子婦父母名). 吁嗟, 舊典淪新程現, 乃往問金溪金前臯丈(面長), 則亦如所聞, 無快活消息”

18)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단성 배양리와 제주 덕수리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사용하고 있다. 광무호적까지 쓰던 호주의 사조 기제가 없어진 것에 놀랄 뿐 아니라 모두에게 출생년에 월일까지 쓰고 아녀자의 이름을 들먹이는 지경에 이르러 이 지방유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민 파악 방법에 정치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1896년의 '호구조사규칙'으로부터 광무호적이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일호 일구를 모두 파악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는 실현되지 못했다. 제주 하모리에는 1907년에 다시 호수의 증대를 꾀했으나 구수는 여전히 고정적이었다. 1909년에 민적조사가 시행되어 1922년의 조선후적령에 이르기까지 호구과약의 수준이 급속히 높아졌다.

1909년의 민적조사 결과인 민적표의 집계를 하모리가 속한 대정현 우면의 남녀 호구수로 보면, 전국적 규모의 집계에 비해 저조한 호당구수를 나타낸다.¹⁹⁾ 1907년 광무호적의 호구과약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표 11〉 광무호적, 민적표, 민적부의 호당구수 및 남녀성비

자료	기준년도	호수	구수	남	여	호당구수	남녀성비	여성호주	여호비
광무호적 중초	1906년	210	849	379	470	4.0	80.6	5	2.4%
	1907년	301	865	376	489	2.9	76.9	29	9.6%
민적표	1909년	2100	6359	2836	3523	3.0	80.5		
민적부 A	1909년	277	1124	503	621	4.1	81.0	6	2.2%
	1915년경	281	1409	655	754	5.0	86.9	4	1.4%
민적부 B	1915년경	267	1532	714	818	5.7	87.3	7	2.6%
민적부 C	1923년경	294	1645	774	871	5.6	88.9	12	4.1%
	1925년	294	1771	848	923	6.0	91.9	11	3.7%

* 민적표는 하모리가 속한 대정군 우면의 호구통계이다(이헌창, 1997년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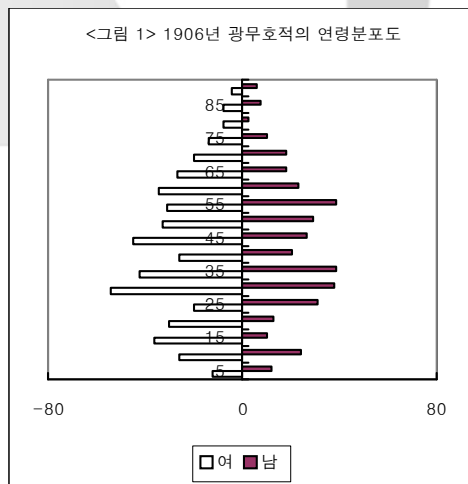
19) 〈표〉 전국의 호구총수 (『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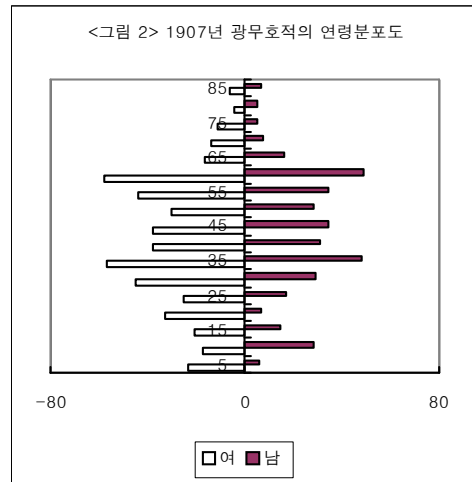
연도	호수	구수	호당구수
1909	2742263	12934282	4.7
1910	2749956	13128780	4.8
1911	2813925	13832376	4.9
1912	2885404	14566783	5.0

민적부A에서 추산한 하모리의 호당구수는 1906년의 광무호적 수준을 회복했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하모리의 보다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자료상의 결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구파악은 1906년, 1907년의 광무호적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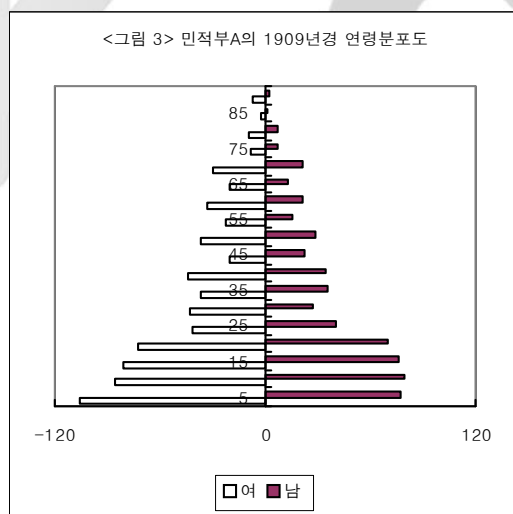
민적부의 호구수는 위에서 분석한 민적과 민적 장부로의 작성 시기에 기준하여 개개의 호구를 일일이 집계한 것이다. 그러나 출생, 사망, 이동에 대한 기록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민적부에는 단순한 집계 뒤에 숨어있는 인구의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표 10>에서는 각각의 민적에 입적 및 제적, 그리고 移籍한 결과만을 제공하기로 한다. 이에 반해 남녀 인구의 연령분포도 <그림 1>~<그림 5>는 인구 개개인의 출생 및 사망년도와 관련해서 앞뒤 자료의 기록을 참조하여 보충하고 0세 이하로 계산되는 연령 등의 기록상 오류도 제외하여 최소한의 호구 파악상의 출입을 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연령분포의 불균형은 자료의 인구파악 수준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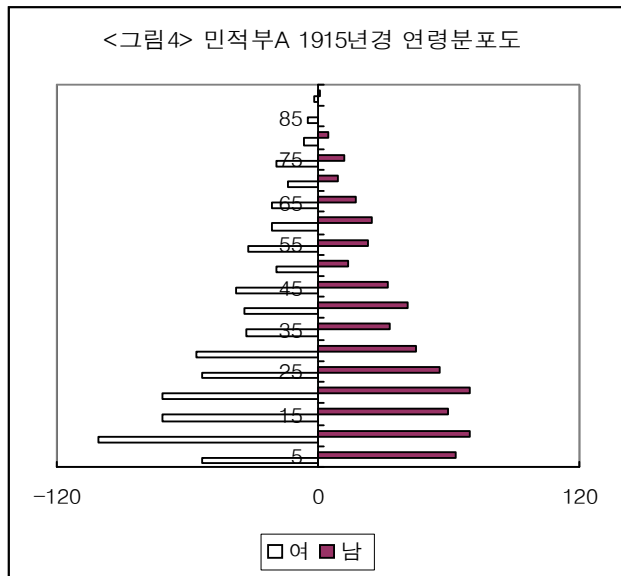
1906년까지의 광무호적과 1907년의 광무호적 사이에 존재하는 호수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호당 구수가 급격히 떨어짐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등재율도 매우 낮다. 광무호적만으로는 하모리에 여성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호구가 기재되었다. 그런데 1906년의 남녀 연령분포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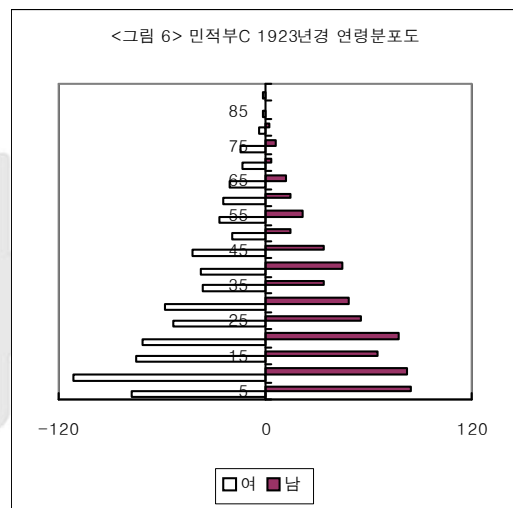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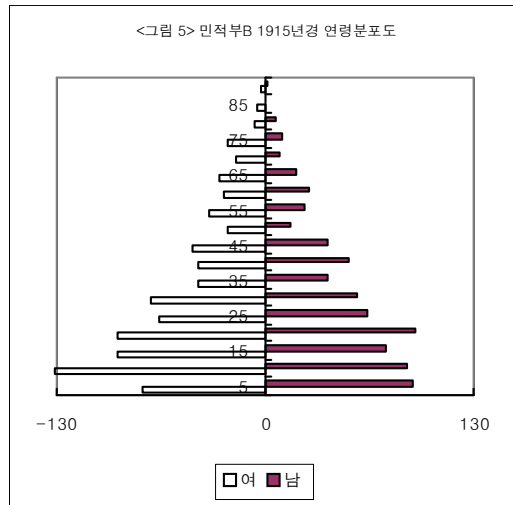
30세 이하의 연령대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남녀수치도 불균형적이다. 또한 35~40세 연령대가 적은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연령분포의 불균형은 광무호적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패턴이다. 호주가 되는 연령대가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장노년층이 구수를 맞추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1907년의 남녀 연령분포를 보면 1906년과 마찬가지로 30세 이하의 인구가 어린 나이로 내려갈수록 격감하고 30~35세, 55~60세의 남녀가 모두 상대적으로 많다. 1907년의 광무호적에는 이전 식년의 광무호적이나 민적부와 대조해보면 연령 기록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때에는 호수를 격증시키는 방향으로 호구를 등재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호주의 역할을 하는 연령대가 극단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민적부A에서 1909년에 하모리에 생존한 것으로 판단되는 남녀인구의 연령분포를 보면, 25세 이상은 광무호적의 그것과 흡사한 모양을 남기면서 20세 이하의 남녀인구가 현격히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린 여자아이의 등재가 두드러지나 남성은 10세 이하에서 여전히 결락이 많다. 당초의 민적조사는 이러한 연령대의 파악에 주력한 듯하다. 민적부A의 기록이 끝날 무렵인 1915년경은 분호를 중심으로 호수의 증대를 꾀하고 호당 구수가 5명에 이르는 시기로 호구파악이 치밀해진 듯하나, 남녀인구 연령분포는 2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민적조사 당초보다 소홀해졌다.



민적부A의 이러한 문제점은 동시기에 민적부B를 재정리하면서 다소 극복되었다. 분호보다 합호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파악을 치밀히 함으로써 낮은 연령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호당 구수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대한 과도한 민적 등재의 경향이 여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진다. 이것은 연장자를 호주로 세워 호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

향 속에서 이미 사망한 부친을 호주로 두거나 호주변동의 시기를 늦추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

노령층이 다소 정리되어 남녀인구의 연령분포가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은 1923년경에 이르러서이다. 규모가 커진 복합가족은 호주승계를 계기로 방계 가족을 분리시키고 호를 단위로 하는 가족의 혈연적 유대에 기초하여 호구과약을 안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남녀성비는 여전히 남성인구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지만 점차 정상적인 수준을 향하고 있다. 단지 5~10세의 여아가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되는 것이 의아하다. 1915년경에도 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것은 1909년경에 5세 이하 여아를 많이 파악했던 영향력으로도 보인다. 1923년경의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러한 인구과약이 지속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남성 및 다른 연령대 여성의 파악이 완전히 못함을 드러낸다.

1916년에 다시 한 번 민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1921년경에는 두 차례 민적법이 개정된다. 이 시기는 그러한 과정에서 1915년의 호구편성 의도를 실현함과 동시에 민적 작성의 개선과 민적법 개정의 한계를 동시에 느끼는 시기였다.²⁰⁾

인구의 이동은 분가 및 합호로 인한 지역 내 호와 호 사이의 이래이거가 빈번하나 중복 기재된 경우를 제거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지역 안팎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민적부는 그다지 친절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혼인(결혼과 출가, 이혼과 재혼)의 경우에도 지역 내의 혼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양가의 민적에 제때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을 넘어서 출가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민적의 인구 파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혼인관계가 발생해도 그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처에 대해서는 혼인 시기까지 상세히 기록하면서 대체로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에 비해 여식의 혼인관계는 상세하지 못할뿐더러 출가한 후에도 제적표시가 없이 계속 그 지역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20) 李英美, 「韓國近代戶籍關聯法規の制定及改正過程—民籍法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6, 日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2004.

한다. 따라서 기록대로 집계하면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적부의 작성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뒤시기로 갈수록 남성 비율이 높아져 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민적의 작성에 대해 혼인관계 기록의 법률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개정, 제시되어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 극단적으로 많은 제주 하모리 광무호적의 남녀성비는 호적작성상의 의도적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민적에서는 여성비율이 호수의 변화와 무관하지만, 광무호적에서는 호수가 많고 그의 변화가 불안정할 때에 여성비율이 높아진다. 호수를 증가시키는 단계에서 여성이 호적운영상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1907년에 하모리는 광무초기와 같이 구수를 고정시키고 호수를 급증시키는 현상을 보인다. 이때에 여성호주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인구의 변동이 크지 않은 만큼, 여성호주는 1인의 독호나 소수의 가족을 거느린 호로 구성되었다. 1907년은 민적이 작성되기 직전의 해로 1897년 광무초기 이후로 재차 호주승계나 분호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해이다. 호세수취와 관련한 호수 증대의 요구가 통감부의 정책으로 강화되기도 했으나, 하모리의 호수증대 방법은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에 비해 민적부에서는 여성호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적법이 남성중심적인 경향성을 띠어가는 1910년대 후반 이후에²¹⁾ 오히려 여성호주가 많아지는 점이 흥미롭다. 구호적이나 광무호적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의 호구등재방식에 기초하여 소가족을 지향하던 분호의 경향에서는 호수의 증대와 함께 남성호주가 증대하였다. 그러나 방계의 친인척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합호 및 분가, 부적자의 호주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여성호주가 필요해졌다. 남편을 잃은 여성이 남자아이가 없거나 어린 경우에 여성호주로서 독호를 형성하는 등의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민적단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인구과약의 양적인 증대에 있다. 초기에는 소가족의 세대로 민적을 분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인구를 확보했으며, 후기에는 정부가 민적의 호로 일률적인 인민과약을 시도하고, 호 구성원의 혈연적

21) 이영미, 앞의 논문.

유대에 근거하여 민적에 긴박시키는 방법으로 인구를 확보했다. 제주에서는 인구대장을 통한 인구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찍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있었다. 일정하게 인구를 확보한 상태에서 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왔던 것이다. 광무시기 초기에는 호세의 호당 일률적인 징수에 대응하여 호 규모에 차등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소규모의 가족으로 호를 구성하였다. 1907년에는 여성을 주호로 세우기도 하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호구과약을 진행시켰다.

소규모의 현실적인 세대로 호를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광무호적의 인구과약은 민적초기의 인구과약 방법과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호당구수를 고정시키거나 오히려 감소시키는 대응방법이 민적단계에서 더 이상 활용되지는 못했다. 광무시기까지 호적장부 작성은 부세수취를 위한 기본대장이라는 목적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민적 작성의 초기에는 광무시기까지의 전통적 인구과약 방법을 수용한 듯하다. 그러나 민적 작성의 후기, 조선후적령에 이르러서는 근대사회에서도 독특한 '본적지주의'의 인구과약을 조선에 시도하였다.

1909년 이후의 민적조사는 식민지 조선에 새로운 호구과약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민들을 당혹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의 생년월일이나 여성의 이름까지 들먹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방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수행해 오던 호구과약의 관례가 정부의 일원적 인민과약으로 전환되고 개개의 위약한 가족으로 장악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다.

Ⅵ. 맺음말

제주 하모리 광무호적의 호구는 구호적에 비해 호수가 증가했으나 구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 중앙정부의 호수증대 요구에 대응하여 호를 잘게 분호하는 데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1907년에 상당수의 새로운 호구를 파악하면서 더욱 소규모로 호를 분할하고 있다. 통감부의 인구정책으로 인하여 호수증대의 압

박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이른 민적법의 시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09년의 민적조사 이후의 민적을 1912년경에 일련의 통호번호로 재정리한 민적부는 기존의 광무호적과 같이 '居住地主義'의 주민등록형식을 띠고 있다. 이 민적부에는 광무호적에 파악되지 못했던 호구를 새롭게 파악하는 한편, 기존의 호를 지속적으로 분호함으로써 호내에 등재되는 구성원을 더욱 치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호구파악은 구래의 호적파악 방식을 답습함으로써 이후의 민적조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민적법 개정으로 민적조사가 면리단위의 행정처로 전환된 이후로 1915년경에 새롭게 작성된 민적부는 호의 구성을 전환시킴으로써 호구파악의 효과를 기도했다. 연장자를 호주로 삼아 이전에 분할되었던 호들을 하나의 호로 승수하는 경향을 띤 것이다. 그 결과 1923년경의 민적부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호구를 파악하는 '本籍地主義'의 호구파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2년의 '朝鮮戶籍令' 이후로 민적이 폐지되고 1925년에 근대적인 국세조사가 시도되기까지의 과도적인 호구파악이라 할 수 있다.

한말에 이르기까지 조선 호적은 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호구가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역을 단위로 일정 수준의 호구총수가 확보되면 되었으므로 실제의 호구를 모두 파악할 필요는 없었다. 일제 초기에 총독부는 부세와 관련 없이 호구파악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인구누락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총독부는 구래의 지방자치적인 호구파악을 폐쇄시키는 대신에 가족 단위의 혈연관계에 기초하는 인구파악 방식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근대적 인구파악은 지방자치적 공동체를 개별 가족으로 분해하고 혈연적 연좌제의 방식에 기초하여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근대적 사회통합의 한 방법이었으며 보다 치밀한 식민지 정책의 실현을 도왔다.

• 참고문헌

- 『濟州大靜縣下幕瑟里戶籍中草(5책)』,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0
- 『下幕里 民籍簿(3책)』, 제주도 하모3 리사무소 소장
- 『慶尙道丹城縣社會資料集』 권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柳泳熙, 『농포일기』(陰陽錄, 己酉年(1909)),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 이현창,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
- _____, 「민적통계표의 검토」, 『고문서연구』 9· 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 李英美, 「韓國近代戶籍關聯法規の制定及び改正過程－民籍法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6, 日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2004
- _____, 「韓國における民事慣習の成文化化過程に關する最近の研究動向」, 『東洋文化研究』 7, 日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2005
- 이승일, 「朝鮮總督府의 法制政策에 대한 研究－朝鮮民事令 제11조 ‘慣習’의 成文化化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3
- 허원영, 「19세기 제주지역의 호구기록과 부세제도－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 중초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회·동아시아학술원 공동주최학술회의 발표문, 2004.12
- _____,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 단성 배양리와 제주 덕수리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 _____, 「호적대장 직역란의 구역 기재와 ‘도이상’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_____, 「조선후기 호적 호의 편제와 성격」, 『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조석곤, 「광무년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 이세영,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 『역사와 현실』 7, 한국역사연구회, 1992

KCS I

**Census taking of Hamo-ri, Jeju in the late
Daehan empire and the early Japanese rule
– Comparing the two, Kwangmu-hojeok and Minjeokbu –**

Son, Byeong-gyu

Compared with the old hojeok(a family register), Kwangmu-hojeok of Hamo-ri, Jeju shows increase in the number of families. But it only divides families into small pieces, and total population is not changed so much. In 1907, families were divided into smaller pieces and many families were checked newly. A population policy of the Residency-General forced increase of the number of houses. This gave advance notice of Minjeok-beop which would have taken effect since 1909.

Minjeokbu of about 1912 is a family register which rearranged Minjeok (investigated by Minjeok-beop) into serial numbers, t'ong and ho. As a former family register(Kwangmu-hojeok), this has a form of resident registration on the basis of the present address. Minjeokbu divided families into small pieces continuously and applied young people left out previously to constituents.

A government office of myon and li investigated Minjeok and Minjeokbu was made out newly in about 1915. This Minjeokbu has a tendency to put divided families into one family making a senior as the head of a family. As a result, we can see that Minjeokbu of about 1923 checked the number of families centering around blood relationship. Minjeokbu began to be made out based on Chosŏn-hojeok-ryong in 1922. I think that this is the original form of the present family register.

Up to the end of the Daehan empire, Chosŏn family register was made out to impose a tax. So it's enough that they secured a fixed level of the number of families in a unit of district. Minjeok of the early Japanese rule

was made out regardless of a tax, but there were still a population-omission. So the government-general finally repealed the old census based on local autonomy and came to try a census based on blood relationship.

K C I

Key words : Kwangmu-hojeok(a family register of the Daehan empire),
Minjeokbu(a family register of the early Japanese rule), a
census on the basis of the present address, a census based
on blood relationship, a census